

변경비교표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□ **정정 사유** : ① 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 (신홍섭 → 전춘봉)

②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1.1.8.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정 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	- <u>2020.8.31 기준</u>	<u>2020.12.27 기준</u> <u>2020.11.30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12.27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신홍섭</u> <u>2020.8.31 기준</u>	<u>전춘봉</u> <u>2020.11.30 기준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신홍섭</u> <u>2020.8.31 기준</u>	<u>전춘봉</u> <u>2020.11.30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채권 운용전문인력 변경	-	<u>채권 책임운용역 : 신홍섭 (2020.01.09~2021.01.07)</u> <u>채권 책임운용역 : 전춘봉 (2021.01.08~현재)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표준편차: 5.61%</u>	<u>표준편차: 6.63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12.27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 및</u>



<p>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	<p>1,800 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 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 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 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 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</p>	<p><u>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 내</u> <u>가. 연 1,800 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 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 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 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u></p> <p>공제제도 <u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 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

		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※ 지방소득세 별도	
--	--	--	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12.27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12.27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12.27 기준</u>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8.31 기준</u>	<u>2020.11.30 기준</u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

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